

# 훈련사업별 FAQ (1)

## 강원

- ☉ (사업주) 훈련에 대한 내용을 전산 상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나, 보관이나 감사를 위해 모든 내용을 종이로 뽑아야 하는 부분이 행정 소모적이고, 종이량이 많아 별도의 보관 장소가 필요하고, 철을 해야 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므로 **페이퍼 작업 생략 요청**
- ☑ 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비용에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
- ☑ 사업주훈련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관련서류를 간소화하여 훈련기관 부담을 줄이겠음

## 전국

- ☉ (사업주) HRD-Net에 대한 훈련기관 애로사항, 개선 요청사항 등에 대해 공단에서 수시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나, **전달된 의견의 시스템 반영 유무, 진행 여부 등 결과를 전달받지 못해 아쉽다**는 의견
- ☑ 시스템반영 결과는 HRD-NET 행정지원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음
- ☑ HRD-NET은 제도를 검토하여 한고원과 협의를 통해 시스템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므로 단기간에 반영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진행여부가 공지되기 어려우므로 개별 문의 필요

## 강원, 경기북부, 광주, 울산, 전남, 대전

- ☉ (사업주) 훈련 중 업무공백이 훈련 참여에 가장 큰 애로이기 때문에 **최소훈련시간 완화 요청(ex. 5~6시간)**
- ☑ 최소 훈련시간 단축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, 법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검토 예정

## 부산, 인천

- ☉ (사업주) 비대면 훈련 출결 관리, 진행 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. 비대면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타 훈련기관의 운영 방법이나 사례 공유 등 **컨설팅 필요**
- ☑ 소속기관에서 사업주, 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시 비대면 훈련에 대한 정보공유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겠음

## 서울남부

- ☉ (컨소시엄) 심사위원 전문성 확보 및 투명한 심사결과 확인을 위한 **심사위원 명단 공개 요청**
- ☑ 심사위원 전문성 강화 및 신규 심사위원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해 매년 사전집체교육 실시
- ☑ 심사 후, 심사위원 전문성 평가를 통하여 피드백 제공 및 사후관리 진행
- ☑ 다만,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, 공동훈련센터와 심사위원 간 사전접촉 우려로 공정성 결여가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명단 공개에 대한 애로사항 있음

## 울산

- ☉ (컨소시엄)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**취업률 산정 시 훈련 수수료 후 3개월 이내 취업 기준 한시적 완화 요청**
- ☑ 취업률 지표는 정부경영평가 및 소속기관 KPI와 연계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모든 공동훈련센터에 적용은 불가 다만, 교통안전공단 버스기사 채용예정자과정 같은 특수성이 있는 분야는 6개월로 확대조치
- ☑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협의하여 성과평가 시, 취업률 구간 배점을 조정하여 전년대비 취업률 저하에 따른 공동훈련센터 피해는 방지 **성과평가 지표개선 완료**



# 훈련사업별 FAQ (2)

## 울산, 대구

- ☀️ (컨소시엄) 공단 본부 차원에서 **원격훈련 우수사례 공유** 등을 통해 **원격 쌍방향훈련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요청**
- ✔️ 허브사업단과 협업하여 비대면 훈련운영 관련 워크숍(20.7월) 및 포럼(20.12월) 실시, 우수사례발굴 금년도 공동훈련센터 권역별 간담회 및 베스트챗프데이 행사를 활용 비대면 교육 우수사례 발표 공유 예정
- ✔️ 해당 자료 및 질의 회시집을 향후 홈페이지 등재하여 공유 예정

## 인천

- ☀️ (컨소시엄) 규정·규칙 문의 시 허브사업단의 답변 권한에 대한 문제로 소동 문제 발생 →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FAQ 또는 사례집 등재 요청
- ✔️ 규정·규칙을 문의할 경우 주관적 판단 방지 및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공단 본부에서 최종 판단 필요
- ✔️ 향후 사례별 또는 유형별 질의 회시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등재하고, 허브사업단 워크숍을 통해 허브사업단 직원 대상 공유 예정

## 경기동부

- ☀️ (컨소시엄) ‘직업기초능력교수자용과정’ 이수에 대해 **교강사 경력으로 이수 대체 또는 훈련시간 단축 요청**
- ✔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2에 의거,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‘직업기초능력교수자용과정’을 필수 의무 수강해야함
- ✔️ 능력개발교육원 문의 결과, 교강사 경력으로 이수 대체 및 훈련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 방침 없음

## 경기동부

- ☀️ (컨소시엄) 평가기준 중 ‘협약기업 유지율’ 항목이 있어 3년간 훈련 실적이 없는 기업을 관리 할 수가 없는 상황 → 3년간 **훈련 실적이 없는 협약기업 명단을 재정비** 할 수 있도록 **평가기준 개선 요청**
- ✔️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(공동훈련센터-협약기업) 제5조 상, 1년간 연속하여 컨소시엄 교육훈련에 근로자 미참여 시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기에 공동훈련센터 차원에서 장기 미참여 협약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관리 중임
- ✔️ 추후 한국고용정보원과의 협의를 통해 1년간 훈련실적이 없는 협약기업의 경우 자동삭제 조치 방안 협의 예정

## 강원, 제주, 서울

- ☀️ (지산맛) 지역과 서울에서 각각 1회씩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를 2회 받아야 하는데, 코로나19로 인해 **지역간 이동에 부담이 있고**, 지역·본부 심사위원의 성향 또는 문구 해석에 따라서 훈련과정 수정이 빈번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**지역 심사를 생략하거나, 심사기준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**가 있음
- ✔️ 지역인자위가 선정한 공동훈련센터의 훈련계획은 공단 본부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역인력양성 기본계획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함
- ✔️ '21년도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 심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비대면 인터뷰 심사로 전환하여, RSC 및 공동훈련센터 전담자의 안전을 확보 후 진행하였음
- ✔️ RSC의 지역심사 시 '21년도 공동훈련센터·훈련과정 선정 심사 매뉴얼을 배포하고, RSC 및 공단소속기관 담당자 대상 심사 관련 설명회 개최('21.10.16., 10.23.)로 동일한 기준에 의한 심사를 도모하였음
- ✔️ RSC의 '22년도 공동훈련센터 및 훈련과정 선정 심사 시에는 위촉된 전체 심사위원 대상 사전 설명회 개최 등을 검토하여 전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



# 훈련사업별 FAQ (3)

## 인천, 전북

- ☀️ **(지산맛)** 인자위 수요조사의 시기는 적합하나, 공동훈련센터가 충분히 분석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의 전달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었으면 함
- ✅ 인자위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기수요조사 관련 일정 조정을 검토하겠음

## 서울

- ☀️ **(지산맛)** 신기술 분야 중 5수준 이상은 훈련생 수준이 매우 고수준이어야 하므로(부장급 위주) 일반 공동훈련센터에서 운영하기 어려우며, 실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속련/신기술/4차 산업 과정을 분리하여 과정을 개설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짐
- ✅ 훈련과정의 설계 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훈련수요자의 수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, 신기술 분야 훈련의 경우 NCS 5수준 이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님

## 경남

- ☀️ **(지산맛)**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**수시과정 인정 간소화 필요**
- ✅ '20년도 수시 훈련과정 운영 계획을 통하여 ('19) 분기별 심사 → ('20) 월별 심사로 제도개선을 하였으며, 지역내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심사는 RSC 및 공단 소속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연중 상시 실시 가능함

## 서울, 부산

- ☀️ **(학습조)** 2박 3일 집체훈련 업무공백 및 부담감이 크므로 **학습조장 및 리더 교육 개편 요청**
- ✅ 2021년 학습조장 및 리더 교육 개편 ☞ 딥텍트 방식(집체+온라인) 도입

## 경북동부

- ☀️ **(학습조)** 순환근무/조직 변경 등으로 학습조 인원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학습조 인원을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
- ✅ 학습조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참여요건 확인이 필요하고, 참여요건을 충족한 학습조원 수에 따라 사용가능 운영비가 달라지므로 공단(지부지사)에 변경신고 필요